
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1.

발 의 자 : 조계원 · 김문수 · 최혁진
노종면 · 임오경 · 이정문
이재정 · 이주희 · 강득구
최민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예술인의 권리보장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전부개정에 맞추어, 현행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에 관한 사항과 관련 과태료 규정을 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4·제5조의2·제6조의4 삭제, 제18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3호의2 삭제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34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

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4 및 제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.

제6조제3항제2호 중 “제4조의4”를 “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6조”로 한다.

제6조의4를 삭제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3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의2제1항 중 “「예술인 복지법」 제4조의4에”를 “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4조의4(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)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,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,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.</u> <u>1. 계약 금액</u> <u>2. 계약 기간 · 갱신 ·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</u> <u>3.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</u> <u>4. 업무 · 과업의 내용,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</u> <u>5.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</u> <u>6.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</u> <u>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</u>	<u><삭 제></u>

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,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,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5조의2(계약서의 보존)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6조(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) ① . ② (생략)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,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·이용할 수 있다.

<삭 제>

제6조(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(생 략) 2. <u>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자료</u>	1. (현행과 같음) 2. 「<u>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</u>」 제16조-- ----- -----
3. (생 략) <u>제6조의4(보고 및 검사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고,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	3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<u>제1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 1. (생 략) <u>1의2.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</u>	<u>제18조(과태료) ①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<u>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 술기획업자등</u> <u>1의3.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 정명령을 위반한 자</u> <u>1의4.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 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 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</u> 2.·3. (생 략) <u>3의2.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 고하지 아니한 자, 자료를 제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</u> 4. (생 략) ② (생 략)	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2.·3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